

서울고등법원 2019. 9. 10 선고 2018나2068897 판결 [경정등기말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전 문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호

담당변호사 김영희

피고, 피항소인1. B

2. C

3. D

4. E

5. F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오정한, 김진하

변론 종결2019. 7. 11.

판결 선고2019. 9. 10.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24. 선고 2016가합534410 판결

환송전_당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7. 12. 1. 선고 2017나2027707 판결

환송판결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0730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E은,

1)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52. 7. 20.

접수 제1744, 1745호로 마친 각 경정등기의,

2) 같은 목록 제2, 3항 기재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4. 8. 4.

접수 제39798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F 주식회사는,

1)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3), (14), (15),

(16), (17), (18), (19), (20),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40.66m², 같은 도면 표시

(4), (5), (6), (7), (8), (22),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74.4m², 같은 도면 표시 (10),

(11), (12), (21),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3m²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71. 4. 19. 접수 제9367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2)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22), (8), (9), (10), (21), (12),

(13), (20), (19), (18), (17), (16), (1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65.6m² 중

133.6/165.6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90. 5. 9. 접수 제1984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3)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22),

(8), (9), (10), (21), (12), (13), (20), (19), (18), (17), (16), (1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65.6m² 중 32/165.6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90. 10. 15.

접수 제45335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4) 가) 2,066,771,640원 및 그중 10억 원에 대하여 2016. 6. 28.부터 2019. 9. 1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1,066,771,640원에

대하여 2017. 1. 25.부터 2019. 9. 1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2016. 6. 28.부터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월 25,688,63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F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B, C, D, E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F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F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나. 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문 제1의 가항, 제1의 나. 1) 내지 3)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F'이라 한다)는 원고에게 ① 2,375,035,2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②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월 25,688,63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3쪽 하6행 ~ 4쪽 1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망 G은 망 V의 2남, 망 H은 망 V의 4남이었다. 망 G이 1951. 2. 11. 사망하면서, 호주상속인인 원고가 망 G의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2) 망 H이 2014. 2.경 사망하면서, 처 망 I과 자녀인 피고 B, C, D, E(이하 위 피고들을 '피고 B 등'이라 한다)이 망 H의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망 I이 2016. 8.경 사망하면서, 피고 B 등이 망 I의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피고 B 등의 상속분은 각 1/4이다).

3) 망 H은 1969. 3. 29.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등에서 건물 임대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피고 F을 설립하였다.』

○ 제1심판결 4쪽 3, 13, 14행의 "G"을 "망 G"으로, 같은 쪽 12, 13행의 "H"을 "망 H"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4쪽 8행의 "가등기" 바로 다음에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4쪽 9 ~ 11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52. 6. 8. 위 등기소 접수 제1213호로 '1947. 3.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망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 제1심판결 4쪽 12 ~ 13행의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상"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4쪽 14 ~ 15행의 "이 사건 각 경정등기"를 "이 사건 경정등기"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5쪽 표 마지막 칸의 "1971. 2. 18. 매매"를 "1971. 4. 14. 매매"로 고쳐 쓴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망 G 사망 이후 경료되었지만,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므로, 망 G의 상속인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경료된 이 사건 경정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무효이고, 이를 기초로 경료된 주문 제1의 가. 2)항 기재 망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주문 제1의 나. 1) ~ 3)항 기재 피고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경정등기 및 이에 기초한 망 I, 피고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피고 F은 원고에게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지 여부 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유무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그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현재의 실체관계와 부합함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360, 377 판결 참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망 G의 사망(1951. 2. 11.) 이후인 1952. 6. 8. 경료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인지 여부

(1) 토지의 소유권이전절차에 있어서 등기이전절차 이외의 다른 법률행위가 적법·유효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등기이전절차만이 위법한 경우 그 위법한 절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33017 판결 참조).

(2)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참조).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갑 제19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 G이 K, L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K, L는 망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947. 3.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K은 망 G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건물 계하 10평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받은 사실, 위 판결에 대하여 K, L가 서울고등법원 4282민공20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1949. 5. 20.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확정판결(갑 제19호증)은 그 증거에 의하여, 망 G의 부 망 V이 1947. 3. 30. 당시 사망 전인 위 G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K, L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2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K, L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50만 원, 1947. 4. 30. 중도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1947. 5. 31. 잔금 170만 원을 이행제공하였으나 K, L가 수령을 거절하여 1947. 7. 4. 서울 공탁국에 위 잔금 170만 원을 변제공탁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3)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 G이 1947. 3. 30.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였던 K, L와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완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망 G은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 K, L에 대하여 위 토지에 관한 적법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다 할 것이고, 망 G의 사망 후에는 호주상속인인 원고가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망 G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망 G의 사망 후에 경료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그 호주상속인인 원고의 소유권을 표상하는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대법원 1994. 10. 7. 선고 94다19891 판결 참조).

라) 소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망 G 사망 이후 경료되었으나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망 G의 상속인인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인정된다.

2) 이 사건 경정등기의 효력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경정) 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등기부상 표시를 실제와 일치시키는 것에 불과할 뿐 어떠한 권리변경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경정) 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 등기가 타인을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다면, 원래의 등기명의인은 새로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변경(경정)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9983 판결 참조).

이 사건 경정등기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소유명의자를 '망 G'에서 '망 H'으로 고치고, 소유명의자의 주소를 망 G의 주소로 기재된 '서울 종로구 W'에서 망 H의 주소로 보이는 '서울 종로구 S'로 고치는 것인바, 이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 등기가 타인을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무효이다.

3) 원고의 경정등기 말소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권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가) 이 사건 경정등기는 무효이므로, 망 H 또는 망 I의 상속인인 피고 B 등은 원고에게 자신들의 상속분에 관하여 이 사건 경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망 I이 무효인 이 사건 경정등기를 기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경료한 주문 제1의 가. 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망 I의 상속인인 피고 B 등은 원고에게 각 상속분에 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F이 무효인 이 사건 경정등기를 기초로 망 H과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경료한 주문 제1의 나. 1) 내지 3)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이므로, 피고 F은 원고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 F이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여 위 토지를 사용·수익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F은 원고에게 위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사용한 데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 감정인 X에 대한 차임감정축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차임은 ① 2006. 6. 28.부터 이 사건 소장이 피고 F에게 송달된 날인 2016. 6. 27.까지 합계 2,066,771,640원, ② 2016. 10. 20.부터 2017. 10. 19.까지 매월 25,688,63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소장이 피고 F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6. 6. 28. 이후부터 향후 이 사건 토지의 인도일까지의 차임 역시 위 ②에서 인정한 액수와 같은 매월 25,688,633원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 F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① 2,066,771,640원 및 그중 10억 원(이 사건 소장 기재 청구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6. 6. 28.부터, 나머지 1,066,771,640원(확장된 청구금액)에 대하여 2017. 1. 23.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17. 1. 25.부터, 각 피고 F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9. 10.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6. 6. 28.부터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25,688,63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경정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1) 망 V은 망 G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한국전쟁으로 망 G의 소재를 알 수 없자 이를 다시 망 H에게 증여하기로 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와 이 사건 경정등기를 경료한 것이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와 원고의 모 망 R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망 H에게 귀속하기로 하고 이 사건 경정등기를 경료하는 데 합의하였다.

2) 망 H, 망 I과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무과실로 점유하였으므로, 민법 제245조 제1, 2항에 따라 이를 시효취득하였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1) 이 사건 토지를 망 H에게 귀속하기로 합의 또는 약정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경정등기가 피고들 주장과 같은 경위로 경료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달리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경정등기가 유효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취득시효 완성 주장에 대하여 가) 망 H이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197조 제1항). 따라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증명할 책임은 없고,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망 H의 점유: 악의의 무단점유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 H은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무효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어떠한 권리변동을 가져오는 것도 아닌 이 사건 경정등기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망 H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

(가) 이 사건 경정등기는 등기명의인을 '망 G'에서 '망 H'으로 변경하는 것인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므로 등기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 없는 사람이 제3자 명의 부동산을 법령에서 허용되지 않는 방법을 통하여 자기 이름으로 바꾼 다음 점유를 개시하는 것은 무단점유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경정등기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의 이름과 주소만을 변경하고 있을 뿐 그 등기원인인 '1947. 3. 30. 매매'는 변경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경정등기의 기재에 의하면 망 H은 1947. 3. 30.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였던 K, L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망 H이 이 사건 토지를 망 V 또는 원고와 망 R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즉,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망 H이 1947. 3. 30. 이 사건 토지를 K, L로부터 매수한 사실은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다) 앞서 본 것과 같이 망 V이 망 G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가 이를 다시 망 H에게 증여하였다거나, 원고와 망 R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망 H에게 귀속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경정등기 당시 등기관이 '이 사건 토지가 망 H의 소유임에도 신청착오 또는 등기관의 과오로 망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인식을 기초로 위 경정등기를 경료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망 I과 피고 B 등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시작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선대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선대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사람의 점유도 그 성질이나 태양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속인의 점유가 자주점유로 될 수 없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2344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7273 판결 등 참조).

(2) 타주점유의 승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망 H은 이 사건 토지를 타주점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할 것이고, 망 H을 상속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를 승계한 망 I, 망 I을 상속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를 승계한 피고 B 등은 모두 이 사건 토지 중 각 해당 부분을 타주점유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다) 피고 F의 점유

피고 F이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제1의 나. 1) 내지 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망 H과의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다툼 없는 사실 및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F은 망 H이 1969. 3. 29.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있는 건물에서 건물 임대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망 H이 설립 당시부터 사망 시까지 대표이사로서 이를 운영한 사실, ② 망 I 역시 피고 F의 설립 당시부터 이사로 등재되었고, 망 H의 사망 직후인 2004. 3. 15.부터 사망 시까지 대표이사로서 피고 F을 운영한 사실, ③ 망 I 사망 후 피고 E이 2016. 8. 11.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서 피고 F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④ 피고 B이 1983. 2. 1.부터 피고 F의 이사로 등재되는 등 망 H의 자녀인 피고 B 등이 모두 피고 F의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었고, 현재도 피고 B, C, E은 사내이사, 피고 D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다른 임원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 F이 망 H, 망 I, 피고 B 등에 의하여 전적으로 운영되는 가족회사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 F 역시 이 사건 경정등기가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피고 F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임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F 역시 이 사건 토지 중 해당 부분을 타주점유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라) 소결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취득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B 등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남양우

판사성충용

판사최현중

별지

1) 약칭은 제1심판결의 것을 그대로 따른다.